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거 창 군 의 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6-118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6-119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6-120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9
2026-141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118

발의일자	2026. 10. 8.
발 의 자	박수자,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김홍섭, 신재화, 이홍희, 백종숙

1.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2026. 9. 18. 시행)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규정(제20조의3)

나. 별표23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10. 1. ~ 10.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군수는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23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제20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군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23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이격거리 내 실제거주세대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100미터 이내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3.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가. 고속국도
 나. 일반국도
 다. 지방도
 라. 군도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119

발의일자	2026. 10. 8.
발 의 자	김홍섭,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백종숙

1. 제안이유

기존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현재의 관광환경과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야간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안 제4조)
다. 전문가 의견 반영 (안 제5조)
라. 야간관광 콘텐츠의 발굴 및 지원(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안 제8조)
사. 성과관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관광진흥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30. ~ 10.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객의 유입과 체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간관광”이란 야간에 관광자원, 관광시설, 문화·예술, 체험, 축제, 공연, 경관·조명 및 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거점 및 명소의 발굴·육성
2. 야간관광에 필요한 시설 및 관광환경의 조성·정비
3. 야간경관·조명·미디어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축제·문화·예술·공연·전시·체험 등 야간관광 콘텐츠의 개발·운영
5. 관광지·공원·수변·산림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사업
6. 숙박·음식점·전통시장 등 지역 관광사업 및 지역상권과 연계한 야간관광 사업
7. 야간관광 안내·홍보 및 관광객 편의·안전 증진 사업
8. 야간관광 관련 상품의 개발 및 관광사업자·주민 등의 참여 활성화
9. 그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문가 의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광·문화·예술·경관·조명·미디어·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야간관광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요 관광자원을 야간관광에 활용하는 사업
2. 야간경관·조명·미디어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야간관광객의 유치 또는 체류를 목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사업

제6조(야간관광 콘텐츠의 발굴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의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야간관광 콘텐츠의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지역 상인, 주민, 문화·예술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간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간관광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성과관리) ① 군수는 야간관광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야간관광 사업의 추진 및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4조)

 나. 야간관광 콘텐츠의 발굴 및 지원(안 제6조)

 다.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합계	1,800	178	6,304	12,600	12,600	33,482
국비	900	-	3,120	6,240	6,240	16,500
도비	270	-	936	1,872	1,872	4,950
군비	630	178	2,248	4,488	4,488	12,032

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수승대 야행관광 조성사업('26년) : 1,800백만원

 나. 감악산 힐링(천문)타워 기본계획 용역('27년) : 100백만원

 다. 천문관광 프로그램 운영('27~30년) : 438백만원

 라. 감악산 힐링(천문)타워 조성 사업('28~30년) : 31,144백만원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임 양 희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120

발의일자	2026. 10. 8.
발 의 자	김홍섭,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백종숙

1. 제안이유

거창군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의 지원 (안 제3조)

다. 운영실태조사 등 (안 제4조)

라. 홍보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보건정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30. ~ 10.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
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경비
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②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군수는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의 지원(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합계(100%)	720	720	720	720	720	3,600
기금(50%)	360	360	360	360	360	1,800
도비(15%)	108	108	108	108	108	540
군비(35%)	252	252	252	252	252	1,260

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720백만원

4.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26년 사업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이 호 현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141

발의일자	2026. 10. 19.
발 의 자	이홍희,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김홍섭, 신재화, 박수자, 백종숙

1. 제안 이유

정부의 기본소득 공모 사업에 대비함과 동시에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소득 및 지원대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안 제3조~제6조)

다. 주민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안(안 제7조~제8조)

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및 주요 사항 심의(안 제9조~제14조)

마. 재원 확보, 성과평가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전략담당관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소득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거창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 사업의 목표·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군수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재정 여건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주요 정책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경제·사회·인구·농업 등을 담당하는 4급 및 5급 상당 공무원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경상남도,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기본소득 지원사업 지원금
 나. 관련 조문: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안 제5조)
 다. 지급기준 : 군민 1인당 분기별 100,000원 지급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세출	1차 연도 (2027년)	2차 연도 (2028년)	3차 연도 (2029년)	4차 연도 (2030년)	5차 연도 (2031년)
기본소득 지급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기본소득 지급
 가. 군민 1인당 분기별 100,000원 지원
 나. 거창군 인구 59,000명 기준

연도	합계	산출근거	비고
1차 연도 (2027년)	**24,000 백만원**	**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2차 연도 (2028년)	**24,000 백만원**	**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3차 연도 (2029년)	**24,000 백만원**	**5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4차 연도 (2030년)	**24,000 백만원**	**5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5차 연도 (2031년)	**24,000 백만원**	**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옥진숙